

건설공사 시공감리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

The Improvement Scheme of Construction Works Supervision System

FOCUS



한국건축감리전문회사협의회는 지난달 1일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건설공사 시공감리제도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외국과 국내의 건설공사 시공감리제도와 그 운영에 따른 사례분석”, “설계자, 시공자, 감독자, 감리자의 역할분담과 특히 시공감리자의 책임과 의무”, “건설공사 시공감리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의 3개 과제 및 종합토론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감리업무의 개념 및 영역정립 및 적정보수율작성이 주요쟁점으로 떠올랐으며, 기존 건축사법과 건설기술관리법간의 감리업무에 관한 규정상의 혼선등의 정립이 시급함이 지적되었다.

本誌에서는 특히 건축사 고유업무로서의 감리업무 영역의 침해가 이루어질수도 있는 선부른 “건기법”의 개정이나 감리제도의 변경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히 이 문제가 신중히 논의된 제3과제 “건설공사 시공감리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과 “종합토론”을誌上 中斷하며, 올바른 감리제도 정착과 정당한 업무수행에 따른 적정 보수 및 책임한계 명시등의 제정립을 위한 관계당국과 건축계의 노력이 요구된다.

□ 編輯者 註 □

건설공사 시공감리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

좌 장 : 건설부의 기술감리담당관인 박수남과장께서 ‘건설공사 시공 감리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의 내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남 : 먼저 본 발표는 건설공사 시공감리 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시도로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확정한 것이 아님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시공감리제도의 도입은 당초 공공건설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의 장이 임명한 감독관이 현장에 주재하면서 품질관리를 도급계약 내용의 적정 이행을 위한 지도 감독하여 왔으나 '86년 8월, 시공중인 독립기념관 화재사건을 계기로 수립한 “건설공사의 제도개선 및 부실대책”의 일환으로,

- 감독관의 구조적 부조리 발생요인을 제거하고
- 감독공무원의 기술능력 및 감독인력 부족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하며
- 민간기술 수준 향상으로 건설시장 개방화에 대처하고자 “민간전문감리제도”를 도입, 민간감리전문회사를 신설 육성하여 공사감리를 수행토록 관련제도를 정비, '90년부터 시행중인 것입니다.

당초 입법 초기부터 계획되었습지만 앞으로는 모두 전면책임감리제도로의 시행을 계획 모색중입니다.

'91년 10월 현재 등록회사 수는 시공감리회사가 95개사(토목 33개, 건축 62개), 전면책임감리회사가 12개사(토목 10개, 건축 2개), 합계 107개 회사로서 '90년도의 경우 전체 대상공사 478건에 감리실시공사는 275건이며, '91년도에는 대상공사가 784건에 534건이 시행중으로 앞으로도 실시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감리대가에 있어서는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상의 보수기준이 없어 토목공사의 경우는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대가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준용하고 있는데 이 방식은 현장상주 감리에 실제 소요되는 직접 인건비에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이고 건축부분의 경우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을 준용하며 적용방법은 소요 기술인력 위주의 실비보상가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실감리들의 제재방법으로서 규정을 본다면 부실감리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5백만원이하 벌금이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와 동시에 당해 감리자의 기술자격 면허 및 기타 자격인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감리자가 수뢰시에는 5년이하의 징역 및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할 수 있으며(공무원에 준함) 감리계약 미이행시는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 위반시는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받게 됩니다.

감리제도 및 시행상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발주자측의 감리시행 기피가 되겠습니다.

발주기관의 인식 부족으로 감리기피, 발주기관의 장 또는 고급관리자의 인식부족과 예산담당부서의 인식부족에 기인하여 감리소요예산 요구 및 편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여 공사감독관 제도에 대한 타성 등으로 감리제도 활용의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감리비 예산 반영기준 미흡·정부예산편성 기준상의

과목에서 감리비는 시설부대비 등의 일부로 되어 있어 품질관리나 안전관리등과 같이 공사원가 즉 예산편성 기준상의 시설비목이 아니므로 감리비의 요구나 편성시 공사비와 연계되지 못하는 취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공시비 예산은 있지만 감리비 예산이 없거나, 감리대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둘째, 부실감리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점입니다.

감리업무 수행에 대한 공적인 지도·통제의 제약으로 감리는 발주자의 감독업무의 대행이지만 감독을 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감사원의 감사수감 근거가 미비하고 감리자의 부실감리로 국고손실 발생시 회계관계 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변상조치가 불가합니다. 한편 부실감리로 인한 피해 발생시 감리자의 계약상 책임한계가 모호한 점도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공사감리제도 실시 여건이 미조성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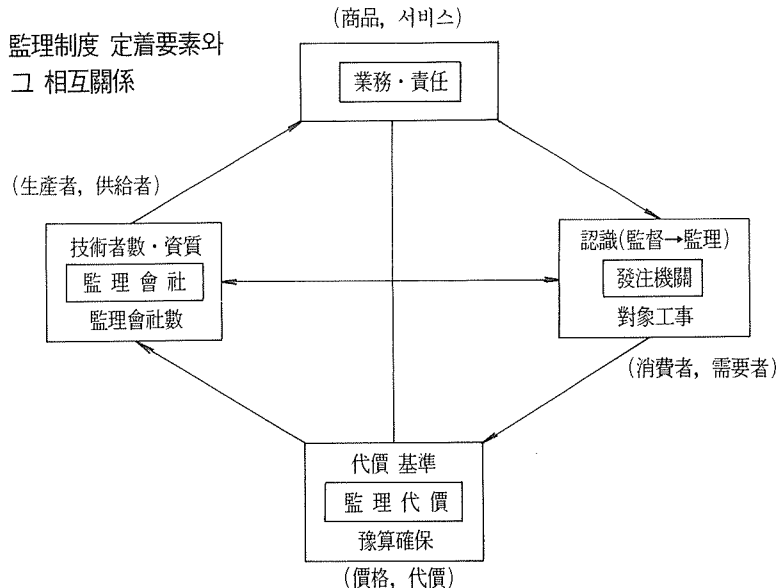
감리전문인력 및 전문회사의 부족; 현행 규정상 현장상주 감리 책임자인 기술사가 부족하고 전면책임감리 전문회사 등록기준의 강화로 등록 업체 및 등록희망 업체가 적어 전면책임감리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의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감리대가 기준의 불합리로 적정감리비 지불 곤란; 기술용역육성법상 용역대가 기준의 감리부문을 준용하므로써 과거의 자문감리 때의 대가를 시공감리에도 그대로 지불해야 하는 점, 시공감리나 전면책임감리의 구분에 따른 대가, 공정 또는 공사규모등 건설기술관리법 체계에 맞는 적정 감리비의 지불이 곤란한 점은 공사감리 정책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감리, 품질관리, 기술심의, 안전관리등 관련제도 운영조치가 미비합니다.

다음은 감리제도 개선방향 도출을 위한 기본틀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감리제도 발전의 기본요소와 상호관계로서 감리제도는 기본적으로 발주기관이라는 수요자에 감리회



사라는 공급자가 감리대가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 업무를 책임을 지고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위의 4가지 요소와 그 상호 관계를 나타내면 그림과 같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리요소중 발주기관은 대상공사에 대한 감리실시의 인식과 대상공사 감리대가를 확보하고 있어야 온당한 구매자의 입장이 되고, 감리회사는 그 회사수, 보유기술자의 수, 그 자질을 갖추므로써 생산자의 위치에 서게됩니다.

업무, 책임이라는 서비스 또는 상품을 생산자는 제공하고, 그 가격에 해당되는 감리대가를 발주자는 지불하되 이 모든 것이 균형적으로 원만히 이루어 졌을 때 적정하고 활발한 감리라는 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것이 곧 감리제도의 정착이라 할 것입니다.

4가지 요소의 관계를 다시 살펴보면 발주기관은 적정 감리 대가를 지불하고 감리회사는 우수한 기술인력을 확보하여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철저히 감리를 수행하겠다는 서비스 정신과 사명감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따라서 적정비용을 지불하여 우수인력이 책임성있는 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야만 감리를 신뢰하고 품질확보등 감리목적에 달성될 것이며 그 결과는 발주기관에 돌아가는 합리적인 순환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개선 방향 도출을 위한 접근방법이 되겠습니다.

앞서의 고찰을 통하여 발주기관과 감리회사는 전체적으로 대상공사 및 감리능력이 균형되게 하고, 또한 감리대가는 업무 및 책임과 균형이 이루어지게 유도하는 것이 감리제도 개선방향의 큰 줄기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의 기본 요소들은 모두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므로 1차적으로 그 각각을 발전시키는 방안의 도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들을 포괄 촉진하는 교육, 관련기구 등에 대해서도 상기시스템의 순환을 촉진토록 방안마련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앞서제기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리자의 회계상 책임한계 강화방안 강구입니다.

가. 공공공사 감리자를 감사수감 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문서작성-공문서로 간주

○감사원의 회계감사 및 직무감사 근거 부여

나. 부실감리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 보상 수단 확보를 위한 변상책임 확보 방안 강구

○감리자의 입찰 보증 및 계약

하자보증제도 도입 및 변상책임 확보를 위한 보증보험 회사 역할을 담당할 감리용역 공제조합 설립방안 검토
둘째, 감리전문인력 업체의 확보 육성입니다.

가. 감리전문회사의 등록 기준등의 완화로 감리업체 확보유도

○전면책임감리 전문회사의 등록 요건 완화

· 기술인력 및 자본금등

○품질시험 장비의 보유기준 중에서 현장 휴대용 간이 시험기구를 보유토록 완화하여 등록업체의 부담 경감

○감리전문회사 등록주기를 현행 매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조정하여 등록기회 확대

나. 감리전문인력 확충

○풍부한 현장경험 및 기술능력을 보유한 경력 기술자를 책임 기술자로 인정하는 방안 강구

예 : 1급 기술 자격자로서 10년 이상 경력자는 감리 책임자로 인정

○건설안전관리 기술자를 감리요원으로 참여토록 하여 건설안전 시공관리분야 감리강화

○품질시험 기술사 및 건축재료 시험사 제도를 신설하고(노동부에 요청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 반영. 추진중) 이를 감리요원으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품질관리 분야 감리강화

셋째, 감리보수 현실화, 감리예산 확보로 감리 내실화 유도입니다.

○감리보수 기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감리보수를 현실화하고

○감리소요 비용을 공사비와 연계하여 예산 확보방안 강구하겠습니다.

넷째, 발주기관 감리시행 촉구 및 여건조성 강화입니다.

○감리시행 기피 일부 발주기관에 감리시행 촉구

○감리대상 공사의 감리예산확보 철저 이행 유도

○감리대가 산정은 요율방식을 지양하고 실비정액 가산방식 적용을 모색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발주기관 감리시행 적정 예산확보 촉구등을 위한 감리관계관 회의 개최 예정('91.12)으로 있습니다.

다섯째, 감리자의 교육강화로 자질 향상입니다.

○감리자의 보수교육을 건설기술교육원에 일원화하여 감리전문교육 실시방안 강구

○교육주기의 단축조정으로 교육의 실효성 제고

○감리협회등을 통한 감리회사의 자체 교육강화

여섯째, 감리관련 중앙·지방조직 확충입니다.

○감리·품질관리·설계심의 안전관리등 기술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건설부 본부, 국립건설시험소, 지방청 시험실들의 조직확충 추진

○시·도등에 감리·설계심의등 전담기구 신설 및 건축종합 민원실 설치

마지막으로, 감리협회등 설립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감리업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감리협회 설립으로 감리의 활성화 및 자율성 제고하고

○감리자의 입찰보증, 계약 및 하자보증등의 재산상 책임확보 수단으로 활용가능한 감리용역 공제조합 설립 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끝으로 추진계획의 대강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1단계로 행정지도 등으로 조치함과 동시에 등록기준 관련등 시급한 상황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는 시행규칙을 개정하고('91.12) 제2단계로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92)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의 일환으로 현재 건설기술관리법령 전반에 대한 개정의견을 각급 관련기관 및 협회 등으로부터 수렴중에 있고 오늘 이 세미나도 수렴 과정의 하나라고 봅니다.

공사감리제도는 건설공사 시행 관리제도에 대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 3년이상 검토하여 내린 결론이므로 비록 현재 미비한 점이 많지만 이 제도를 정착시켜 우리나라에 새로운 감리문화를 이룩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관계기관, 발주기관, 감리자, 시공회사등 모든 관련 주체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 요청됩니다.

특히 건설분야의 국가경제에서 역할증대를 원활히 수용하고 국제경쟁력에 대비하는 길은 고품질 건설공사의 시행에 있으며, 이를 위해 발주자, 감리자, 시공자의 3자가 대등한 위상으로 건강한 3각관계의 정립이 우리건설 분야의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데는 감리자의 분발은 물론이지만, 발주기관 및 시공업체 관련자 여러분과 관련기관의 감리제도 정착에 대한 많은 이해와 지속적인 협조가 필수불가결합니다.

'91년도에 저희 기술감리담당관실에서는 감리 조기정착 방안수립을 과제로 하여 설문조사, 실태조사, 기술관리법 개선의견 수렴, 감리예산 확보유도, 감리이행촉구, 감리제도 개선작업등 많은 일들을 하였으나 저희들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력을 바라며 지금까지 감리제도의 틀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개선할 사항을 제시하였지만 이곳에서의 토론과 또 다른 기회를 통해 기탄없는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진지하게 검토하고자 합니다.

“건기법”이 제정되면서 건축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와 공사감리중에서 공사감리부문을 떼어서 공공공사의 감리부분을 별도로 제정하였는데, 따라서 건기법에서 추구하는 감리의 목표와 건축사법에서 추구하는 감리의 목표가 서로 달라 혼란이 야기되었으며

현행 건기법 제40조에 의하면 건기법에서 시공감리를 한 경우는 건축사법 및 건축법에 의한 공사감리를 시행한 것과 같은 것으로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공사에 있어 미관이라는 예술적 요소에 대한 의무가 없다든지 그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없다든지 하는 결과를 낳게 합니다.

좌 장 : 이어서 바로 토론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이문보 : 발표자께서는 시공감리의 충실화를 위하여 여러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 내용에 대하여는 대체로 동의합니다만 몇가지 다른 의견이나 보충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감리의 정의에 대한 설문문제인데 감리라는 것은 건축사법에 의하여 먼저 시작되었고, 20여년이상 시행되면서 그가운데 불만스러운 것도 있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발전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후 “건기법”이 제정되면서 건축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와 공사감리중에서 공사감리부문을 떼어서 공공공사의 감리부분을 별도로 제정하였는데, 따라서 건

기법에서 추구하는 감리의 목표와 건축사법에서 추구하는 감리의 목표가 서로 달라 혼란이 야기되었던 것입니다.

현행 건기법에서는 건축물을 건축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조물로 보고 있어서 그 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 전체적인 바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기법에서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관리는 시험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건축사법에서는 건축물의 미관과 기능, 구조 이 세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물의 미관이라는 중요요소를 관리시험으로서는 도저히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축물의 중요 특성인 예술적인 요소를 건기법에서는 확보할 도리가 없다는 이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행 건기법 제40조에 의하면 건기법에서 시공감리를 한 경우는 건축사법 및 건축법에 의한 공사감리를 시행한 것과 같은 것으로 보게 되어있기 때문에 공공공사에 있어 미관이라는 예술적 요소에 대한 의무가 없다든지 그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없다든지 하는 결과를 낳게 합니다.

그다음 건기법에서 정하는 감리는 시공감리와 전면책임감리 두가지로 나뉘어 있지만 건축사법에서는 일반·상주·종합공사감리 세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물론 건기법에 의한 시공감리등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부문에 한해서 시행되므로 일정규모이하의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건축사법에 의한 공사감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사감리에 대한 것은 다섯가지가 얽혀서 혼동이 일어나므로 법이 제대로 운영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를 명백히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건기법은 시공감리에 대한 업무규정과 자격규정이 있습니다만 업무규정가운데는 좀더 상세한 책임한계등을 명문화하는 보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건축사법에 의한 책임의 귀책은 건축사 사무소 개설자가 됩니다만 건기법의 감리전문회사는 법인이므로 책임도 그 회사가 지게되어 실제로 감리업무를 하는 행위자하고 그 법인으로서의 관계가 분명치 아니하므로 연구검토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품질시험 기술자 제도에 대한 제안입니다. 현재 시공기술사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시공감리자인 시공기술사가 품질시험도 함께 관여하도록 운용되는 현실로 알고 있습니다만 품질시험 기술사가 생기면 기존의 시공기술사와의 한계 정립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또 품질시험 기술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시공회사와 감리회사중 어디에서 요구되는 것인지 등을 매우 신중히 연구검토해 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좌 장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 주공의 정남식부장님의 토론을 들겠습니다.

정남식 : 주공의 감리담당 정남식입니다.

발표해 주신 박과장님의 시공감리제도의 향후 개선방

안과 연계해서 시공감리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발주처의 실무자 입장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현재의 감리전문회사는 건축사사무소로서의 설계업무를 겸하고 있다 보니까 감리전문인력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하고 감리용역을 수주한 후에야 필요인원을 채용하여 현장에 투입하는 현실입니다. 또 기술자는 감리회사의 영세성 또는 장래 보장성 미흡등으로 취업을 기피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의 생각은 감리회사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것과 병행하여 규모를 대형화하거나 적용대상 공사범위를 민간공사까지 확대하므로써 기술자 확보와 그 운용이 용이하고 감리용역을 전문으로 하는 용역회사로 육성 발전시키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감리적용 대상 공사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사내용에 따라서 감리자를 어떻게 할용해야 하는가 하는 점과 발주기관의 자체기술자 보유나 기술수준등에 따라서 발주처가 판단하여 적용이 가능하도록 감리의 종류 및 적용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관계법에서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서에도 저희 주공에서 감리자 배치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발주처 측에서 감리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먼저 정립이 되고난 후 그에 따라서 감리자의 자격이나 업무범위등의 사항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좌 장 :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진이종합건축의 김무현 사장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김무현 : 진이종합건축의 김무현입니다.

제도개선 차원에서의 말씀은 앞서 발표와 토론 많이 있었으므로 저는 현장감리 실무차원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의 건설현장을 살펴보면 QC매니저를 제대로 쓰지 않고 있는데, 외국의 예를 들어보면 현장조직 사이에 프로젝트에 대한 현장소장이 있고 QC매니저가 있어서 리포트 보고할 때에는 QC매니저는 현장소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현장소장 보다 차상위자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QC매니저가 보고할 때에는 항상 차상위자에게 보고하므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공내용에 대하여 품질관리에 대한 품질관리 컨트롤을 하게 됩니다. 조직에 있어서도 QC매니저 밑에 구조물 콘크리트 시험, 자재, 샘플, 토질시험등 기타에 대한 시험실이 조직되어 있어서 이러한 모델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 건설현장의 현황은 대개의 경우 공사부장이 있고 공정담당자가 있지만 품질시험 관계자는 전혀 없는 형편입니다.

주공의 현장을 보더라도 5~8개의 회사가 함께하여 시험실을 겨우 운영하는 정도입니다. 앞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시공자측에서 시공사항의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게 되는 QC리포트를 하게 되면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한 책임문제라든지 리포트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 계획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리제도의 개선 차원과 병행하여 현장에서 이러한 QC매니저제도를 같이 도입하면 현장에서 발

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좌 장 :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통우건축(주)의 강철구 사장님 토론말씀을 해주십시오.

강철구 : 강철구입니다. 박과장님께서 시공감리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말씀을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해 주셨지만 저는 이것은 깊이 생각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을 다시 강조하는 의미에서 한두가지 간추리겠습니다.

일반 대중들이 볼 때에 설계를 의뢰하여 허가만 득하면 바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반드시 감리를 통하여 설계도서대로 제대로 시공되는가를 확인하는 업무가 있다는 것을 일반인들에게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다 못해 정부공사를 발주하는 실무자조차도 감리업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설득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들이는 때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서야 제도 발전이 더디어지지 않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시공감리에 임할 때 지급받는 감리비의 개념에 대해서입니다. 이 감리비의 개념도 아까 말씀중에서 잠깐 비치었습니다만 감리비는 전체공사비에 속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급받는 보수액 산출기초는 기술자의 등급별 인원에 따라서 계상지급 받고 있는데 더욱더 복잡다변화되는 우리나라에서 감리업무를 좀더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발전방향으로는 우선적으로 적정보수액의 지급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공감리의 보수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윤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정산해 보면 그 이윤이 불과 몇 %정도 밖에는 되지 않는데 이것이 어떤 공사에서 얼마만큼은 감리비의 명목이라 하는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어야겠습니다.

일예로 100억원 공사에서 시공감리비가 5억이라 가정한다면 감리요원이 한명이든지 두명이든지 시공감리계약을 체결한 업체 조직이 책임지는 것이므로 기술 인원을 떠나서 어떻게 좋은 장비와 방법으로 제대로 시공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지 거기에 몇사람이 들어가고 등급은 어떻게 하는 개념이 중요하게 아닙니다.

현행과 같이 단순히 기술등급에 대한 인원수로서 매달 월급을 계상지급하는 개념으로 보면 우수기술자의 상시보유가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감리에 임하는 자세와 수준이 발전을 커녕 그저 평범한 수준정도에 머무는 결과를 계속 되풀이하는 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에서 제기된 좋은 방안이 많이 있었지만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는 감리 보수의 현실화로서 기본적으로 감리비의 개념이 전체공사비 속에 일정비를 포함되어 있다는 개념의 정립입니다.

또 하나는 최근 몇년간에 걸쳐 나타난 것이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 기술자의 부족이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인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지만 통계상으로 보면 여러 등록 기술자가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일을 해야할 경우 실제적으로 기술자의 확보가 거의 불가

능한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잠정적으로 어느기간 동안만은 한시적으로 경력을 인정한 기술자의 제도운용이 되어야 원만한 업무수행이 되지 현행과 같이 법규정상의 운용으로는 형식을 위한 것밖에는 안됩니다. 등록기준에 의한 기술인원에 현실적으로 감리요원을 확보할 수 없어서 응찰하고 싶어도 참여를 못하거나 시공감리 계약을 해놓고도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던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좌 장 : 수고하셨습니다. 제한된 시간내에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토론자의 의견에 대한 질문사항은 종합토론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과의 발표와 토론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종합토론

사 회 : 끝으로 오늘 세미나의 주제발표와 토론내용에 대하여 종합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

현행과 같이 단순히 기술등급에 대한 인원수로서 매달 월급을 계상지급하는 개념으로 보면 우수기술자의 상시보유가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감리에 임하는 자세와 수준이 발전을 커녕 그저 평범한 수준정도에 머무는 결과를 계속 되풀이하는 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에서 제기된 좋은 방안이 많이 있었지만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는 감리 보수의 현실화로서 기본적으로 감리비의 개념이 전체공사비 속에 일정비를 포함되어 있다는 개념의 정립입니다.

습니다만 오늘 세미나에 약 600여명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지자체 또는 정부투자 기관등에서 130이라는 많은 수가 참석하신 걸 보니 그동안 소외되었던 감리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본 세미나가 성황리에 마치고도록 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 장 : 금성종합건축의 한종언입니다.

이렇게 많은 참석자 분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장시간동안의 이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1과제, 제2과제, 제3과제를 통하여 여러가지 문제도출과 제시된 개선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맺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세미나는 지금의 이 자리에서 어떠한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보다는 이러한 세미나에서의 의견 수렴과정을 통하여 건설관계인들이 앞으로의 이정표를 설정하는데 있어 하나의 큰 동기가 될수 있는데 의의가 있다할 것입니다.

먼저 (주)건축국 종합건축의 대표이며 본협회의 김 영수이사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 (주)건축국 종합건축의 김영수입니다.

오늘 이같이 3가지의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저도 좋은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중 한가지는 건 기법에 의하여 설립된 감리 회사가 사실상의 조직이 전 면책입감리와 시공감리 전문회사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데 대하여 그 조직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 이유는 아까 주공측의 발표가 있었지만 감독 권한을 갖지 아니한 감리는 그 효과와 운용면에서, 또한 기능과 역할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감리자에게 감독권한의 부여가 필요하겠고, 둘째 이유로서 2종류의 전문회사의 등록기준상의 차이점은, 물론 사무실 면적과 기술인력 자본금도 있지만 크게 보아서 시공기술사 1명과 3명을 보유하는데 있다고 보아 지는데 실제로 이것은 제도운용상 실제적으로는 별반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다른 하나는 시공감리대상 건축물의 대상에 관해서인데 현재는 정부투자기관이상의 국가기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 시행되고 있는 신도시 건설과 같이 건축주와 시공자가 동일한 민간 공동주택의 감리도 포함되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봅니다. 이외 기타의 건축물은 설계의 연장선상의 설계감리개념으로 보아 건기법에 의한 시공감리가 아니어도 상관없을 것으로 봅니다.

좌 장 : 다음은 본 협의회 강기세 부회장님께서 상주감리의 강제성 규제완화와 기술인력의 적절한 활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강기세 : (주)범 건축의 강기세입니다.

그동안의 토론 과정에서 제기됐듯이 그동안 시공감리의 원만한 수행에 큰 제약요소의 하나가 인력난이었습니다. 이것은 감리비 보수액의 문제에도 함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주감리 인원수에 기초하여 감리비의 산정방법을 쓰고 있으므로 사람이 고정화되고 그에 대한 Quality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요율에 의한 시공감리비의 보수기준을 급급히 마련함으로써 감리회사에서 보증을 들고 감리를 수행하는데 대한 책임을 지면서 노하우를 자기나름대로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부의 시공감리요원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 전체에 대한 콘트롤할 수 있고 현재의 책임감리자는 2~3개의 현장을 순회하면서 책임있는 감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행과 같이 맨파워에 의한 감리보수액 산정방식은 물론 감리요원인 건설기술자를 지속적으로 보유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사감리가 없는 Blank동안에는 감리요원을 경영상 방출해야할 경우도 생기는데 일이 없다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한 기술자의 보유조정계획의 수립이 불가능하여 다시 감리를 수주한 경우 전반적으로 감리요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기술인원의 확보가 곤란한 문

종합토론

- 좌장
한중언
(주)종합건축금융
- 토론자
이영희
(주)희림종합건축
김영수
(주)건축국종합건축
강기세
(주)종합법건축
황상모
럭키개발(주)
이성주
(주)유신설계공단
이명호
중앙대학교수
장중규
주공건설본부장
장래섭
(주)남원건설
박수남
건설부
기술관리담당관

제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감리보수비는 요율에 의한 산정 방식이어야만 감리전문회사가 안정적인 기술자 보유로 원만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감리자의 업무 및 책임에 관해서인데 이것은 아무리 법적사항으로 규정을 해도 실효성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선진국의 사례를 조사해 보았는데 예를 들어 방수관계인 경우 설계자나 감리자가 A라는 방수공법을 제시했을 때 시공자가 그 공법을 책임질 수 없을 때는 시공자가 다른 Alternative한 안을 제시합니다.

그럴때 감리자가 문서로 설계의 안에 대하여만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한다면 시공자는 거기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시공자의 방법에 감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했는데 시공자의 방법으로 시공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리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방법으로 제도가 운용되는 경우 책임한계가 분명하게 되므로 시공자와 감리자간에 있어 감리자에게 권한을 주고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는 법적인 뒷받침과 적절한 보수의 지급으로서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어질때 우리나라 시공감리제도가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좌 장 :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본협회의 감사께서 설계감리와 시공감리와의 구분과 건축에서의 설계감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종합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영희 : (주) 희림건축의 이영희입니다.

앞서 발표한 내용중에서 저는 특히 이명호, 이문보교수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건축공사의 감리에 대하여 평소 제가 갖고 있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일로써 건기법 제정당시인 '87년도에 찬반양론이 격론을 벌였습니다만 반대의 논리는 건축사법을 중심으로한 건축사협회에서 설계와 공사감리를 주업무로 하는 건축사들의 총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 논리의 핵심은 건축물이란 발생과정에서부터의 속성이 토목분야와는 달리 작가의 창의적 의도와 저작권이 존중되어야 하고 문화적 표출비중을 중심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품질관리위주로만 국한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축물의 설계감리는 설계의 연장선 의미에서 그 정의를 두어야 하고 건축물의 착공에서 준공때까지 설계자의 참여와 관여가 배제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 주된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독립기관관 화재사건을 기점으로 건기법의 수용범위를 건축과 토목으로 포괄적으로 묶어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건축물이나 토목구조물의 질을 높이는 것이 강하게 제기되어 건기법이 제정된 것으로서, 건기법에는 설계와 감리를 분리함을 원칙적인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정당시 긍정적인 논리는 정부기관으로서의 제한된 능력으로는 기술자 보유면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민간기술인력을 기획 단계에서부터 참여시켜서 품질관리 측면을 주도하게 하므로써 기술축적과 함께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주된 의견으로서 이러한 점은 저희도 긍정하는 측면이 있

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정된 건기법이 2년여 시행되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많은 시행착오에 대한 개선여지를 남겨 주었는데 많은 경우에 있어 시공감리발주권에 대해 유찰 사례가 빈번하고 또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부발주처 자체에서도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발주를 기피하는 현상도 초래되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 건축사법에는 공사감리, 건기법에는 시공감리로 용어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자체에 용어의 정의, 업무의 성격과 법률적 책임사항등을 재정립하여 시장경제의 필요성에 따라 민간공사나 공공공사의 구분없이 적용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말해서 건축공사 감리는 설계감리라고 정의하던지, 일반감리라고 정의해서 반드시 설계자가 참여해서 설계의도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시공감리와 구분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즉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Design컨트롤과 Quality컨트롤을 이원화해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 공사규모가 크든 작든 발주처가 기관이든 민간이든 Design컨트롤할 수 있는 설계감리는 설계시작서부터 준공때까지 유지되어야겠고 그 이상의 상주공사 감리나 종합공사 감리 내지 품질관리를 위주로 하는 시공감리는 건축주가 판단하여 필요에 따라 계약체결 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좌 장 :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유신설계공단의 이석주 전무이사께서 지금까지 건축부문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토목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요약해 주시지요.

이석주 :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여 여러가지 귀한 것을 제자신도 배웠습니다만 법적인 용어상의 문제에서부터 많은 혼란이 있다는 것을 느꼈고 저 역시 전면책임시공감리제도로의 운용을 강조했습니다마는 관에서의 어려운 입장도 새삼 실감하였습니다.

저도 한가지 부언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중에서 집장사 집이라면 시공질이 형편없는 엉터리집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데 제가 이번 세미나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공공 공사보다 민간공사 부문이 배이상 크다는 것과 그 중요성을 느껴습니다.

관공사등은 발주자가 시공자를 감독하는 과정을 통해 그래도 양질의 건축물을 추구하는 반면 민간집장사라는 것은 싸게 지어 빨리 파는 식의 장사속 수단이지 건축물의 품질제고는 상당히 외면되어 있고 또 자주 주인이 바뀌므로 일정이상의 품질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이러한 소규모의 건축물에서부터 감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전반적인 인식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고, 어떠한 감시감독체제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곁들여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좌 장 : 감사합니다. 종합토론이 진행중입니다마는 지금 말씀해 주신 분 이외에 토론자로 내정되신 분은 주제 발표시 이미 의견을 피력하셨으므로 시간관계상 바로 플로어에 계신 분들의 종합질문을 받도록 하겠으며, 그전에 오늘 세미나의 전체적인 결산을 중앙대의 이명호교수님께 부탁하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호 : 사실 오늘의 이 세미나가 이렇게 많은 건설관계인이 참석해 주시고 열띤 토론의 장이 될줄은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여기와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와 같이 감리업무의 현실적 문제가 크게 대두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고 이만치 우리의 건설분야가 많이 발전했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중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해외에 나가서는 일을 잘했는데 국내에 오면 왜이리 일이 거치냐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해외건설에 대하여 여러분도 익히 아시고 저도 가끔 나가보았습지만 그쪽에는 감리기법이 철저하고 제도적으로 완벽하여 우리 시공업자가 끔찍을 못합니다. 왜 그러한가를 우리가 한번 반성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우리나라 건설문화창달을 하는데 감리라는 직분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을 우리가 다같이 인식을 같이하고 홍보를 해야되겠고, 그와 동시에 국내의 감리기법을 철저히 수립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충 제기된 의견을 보면 국내외에서의 사례들을 많이 열거해 주셨고 또 발표자분들의 의견으로서 법적인 제도개선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바람직한 주장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건기법의 규정이 건축의 감리업무에 적합한 것인가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건축사법이 오래전에 제정되었었는데 이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정부에서는 새로이 품질시험기술사의 제도도입 논의가 있었는데 이 기술사제도가 또 무엇이나하는 의구심이 있고 토목은 그러한 시험제도가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특히 건축분야는 감리의 참여분야가 또 하나 늘어나는 것인가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요컨대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된 것을 줄여본다면 과연 감리의 필요성과 전문성의 기본정신이 무엇이나를 생각해야 할 텐데 이것을 넓은 의미로 보면

첫째, 건축문화 창달 측면의 절실한 취지에서 정착이 되어야겠다는 것과 둘째, 이 제도가 정착이 되려면 기업성도 살려야 된다는 점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더 대국적인 견지에서 볼때 기업성만을 강조한다면 설득력이 반감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역할분담 측면, 다시말해서 시공자, 감리자, 설계자, 감독기관측과 더 나아가서 자재메이커와 시험검사방법마저도 관련이 있겠습니까만 시공현장에서 전체적인 사항을 컨트롤하고 핸들링하는 책임은 건축물을 직접 축조하는 시공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만 시공자가 미처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게 될 것이므로 이 부분을 지도하고 기술교육을 시키고 하는 최종적 측면에서 드라이브해 나가는 액티브한 것은 역시 감리자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감리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게 아니냐 해서 현장에서 만큼은 감리자 중심의 상당한 권위가 있는 협의기구가 발족되어 권위도 주어지고, 그 책임도 부과하면서 기업성도 살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세미나에서의 큰 수확이 있다면 용어의 정의에서부터 궁극적으로는 감리의 개념이 많이 압축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겠고, 제도적인 개선점으로는 건기법과 건축사법을 어떻게 건축관계에 부응시켜서 잘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보정할 필요가 있다

는 것입니다.

건축은 토목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건축은 저작권에 관계가 있는 것이나 토목은 설계자의 전문성과 감리기술의 전문성이 분명히 구분이 되어 현장에 나갈때 감리단에 위임하게 되면 설계자는 별로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대학에서의 교과과정베이스를 보아도 엔지니어링 베이스인 토목은 설계작업시에도 구조계산 작업등이 주가 되고 건축은 대부분의 교과과정 목표가 디자인에 있으므로 그 뿌리가 상당히 다르며 다만 건설이라는 측면에서만 통일성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건축사법에서의 감리의 개념과 건기법에서의 시공감리 개념에 있어 근본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게 사실이므로 이것을 앞으로 적절하게 조정해 나가면서 감리의 전문성이 정착되고, 이러한 분위기가 확대되어야겠다는 것이 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좌 장 : 이런 기회가 좀처럼 마련하기 힘이 들므로 사실은 좀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약속된 시간이 있으므로 플로어의 한두분 정도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자 : 이점만입니다. 건설부의 박과장님께 두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시공감리를 함에 있어 기술 인원이 부족하므로 기사1급 자격자로서 10년의 경력이 있으면 책임감리자인 기술사를 대신할 수 있도록 시행코자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부산하의 기술사는 건설업법, 건기법에 있습니다만 국가기술자격법상에는 주무부장관은 해당 기술사를 우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업법도 일정기간의 경력자로서 1급기사로 대체했는데 건기법에서도 1급기사로 대체한다면 기술사들은 어디로 가야하는 것인가, 기술사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부득이하게 기술사가 부족하여 그렇게 밖에 시행하지 않을 수 없다면 잠정적인 시한부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고, 1급기사자격자로서가 아니고 다른데도 모두 1급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로 되어 있기 때문에 1급기사 자격취득후로 할 것을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또한가지는 부실감리를 방지하는 제도적장치 미흡에 대한 보완으로 감리회사에 근무하는 기술자를 공무원에 준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자본금도 미약한 개인에게 묻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법제정시부터 문제시되었던 사항입니다만 실제적으로 공무원은 공사감독하다가 부실한 시공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감리책임사항을 대두시켜 보험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박수남 :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리기술인력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경력기술사를 기술사로 대체하면 기술사는 국가에서 인정해준 자격인데 곤란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물론 저희들도 국가에

서 부여해준 기술사자격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술사만으로 해서 수급이 원만히 해결되었다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토목이든 건축이든 등록된 기술사가 절대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수의 기술사가 현재 용역업체에 있는데 그 기술사들이 감리전문회사로 전입된다면 용역업체는 그만큼 손실이 있을 것이므로 기술사의 인원이 절대부족하여 이런 의견이 제기된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고, 또한 기사1급 취득후 5년이든 10년이든 기술실무에 종사한 자가 실제로 이제 갓 면허를 취득한자보다 실용면에서 더 우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개선방안으로 말씀드린 유인물의 내용은 어떠한 방침을 확고하게 정하여 논 것이 아니고 실감이 날 수 있도록 한 가지의 예로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제도의 인정유무에 대해서는 기술사들도 이해를 주실 것으로 기대되나 그 조건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많은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실공사가 되었을 때 공무원인 공사감독이 벌을 받느냐고 하셨습니다만 공무원이 감독이 되었을 때 설계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 필요한 때에는 변상책임을 받게 됩니다.

감리자도 설계변경을 하지만 실지 감리에 대한 주의를 잘 기울이지 못하여 큰 손상을 주었다면 그 업무를 주무했던 입장에서 의당히 책임을 지우는 것이 떳떳하기 때문에 보험제도등으로 한다든지 그 범위는 계약보수총액의 범위내에서 예를들어 계약보수 없는 것이므로 상식이

오늘 세미나에서의 큰 수확이 있다면 용어의 정의에서부터 궁극적으로는 감리의 개념이 많이 압축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겠고, 제도적인 개선점으로는 건기법과 건축사법을 어떻게 건축관계에 부응시켜서 잘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보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건축은 토목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건축은 저작권에 관계가 있는 것이나 토목은 설계자의 전문성과 감리기술의 전문성이 분명히 구분이 되어 현장에 나갈때 감리단에 위임하게 되면 설계자는 별로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수용되는 선에서 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 장 :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자 : 무영건축의 박영곤이라 합니다. 저는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건설부 박과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기술 관리법에는 감리업무의 한계가 어느정도 지어져 있지만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는 업무의 한계가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분당신도시의 아파트의 공사감리 현장에 나가 있는데 사법에 의한 종합공사 감리업무내용 중에는 시공지도, 공정관리지

도, 자재선정등이 있고 품질관리는 감리업무내용에도 없는데 얼마전 건설부에서 감사가 나왔을 때 품질관리에 감리가 해야된다고 했습니다만 지적사항이 많으면 저희가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무규정을 애매하게 하는 것보다는 종합공사감리의 경우 어느정도 업무내용을 구분해 주시는게 저희들이 감리하는 입장에서 업무를 좀더 확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일의 능률도 더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수남 :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동감합니다. 오늘 이 세미나에서 지금까지 상당히 비중있게 논의된 바와 같이 감리의 개념이나 범위의 설정이 어렵고 현실 제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기법에서도 시공감리업무의 내용이 13가지로 나와 있지만 저희도 어떤 때는 애매할 때도 있고 실무적인 책임을 감리자에게 물을 때도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나중에 다루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시공자가 솔선해서 성실히 업무를 해주어야 되는 것을 시공자가 잘못된 것까지 감리자가 덮어 쓰는 것을 시정해야 되겠고, 또 한가지 그러한 문제점에 있어서 법이나 규정은 운용상의 큰 울타리를 정해주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건축물이나 현장의 특수성에 따라서 감리자와 발주자간에 감리계약시 세부적으로 정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감리계약시 감리자는 상대적으로 전문적 기술지식이 부족한 발주자에게 어느선까지 하고 발주자측인 시공자는 어디어디까지를 해라 하는 것을 확실하게 명세하여 수행하여 나갈 때에 그러한 경험적 사례가 축적되어 점차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나가면 그것을 기점으로 발전적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고 봅니다.

회 장 : 한규봉입니다.

주최자 입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발언을 생략하려고 했습니다만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것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좀전에 이정만선생님께서 질의하시고 박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저는 조금 절충적인 의견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기술사들을 일정자격자로서 일정경력이상인 자를 대신할 것을 검토중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만약에 기술사나 건축사가 100억원에 해당하는 현장을 책임질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일정경력자가 100억원에 해당하는 현장을 책임질 수 있게 한다는 표현을 하지 마시고 100억원 현장은 일정자격을 지닌 경력자가 책임지도록 하고 그러한 현장 2~3개를 그 상위급인 기술사나 건축사가 책임지고 콘트를 할 수 있는 식의 방법으로 이끌어 간다면 기술사들의 부족도 개선이 될 것이고 건축사나 기술사들도 우리의 설 땅이 없지 않느냐는 식의 불만 의견을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둘째로 감리하는 사람을 공무원에 준해서 책임지도록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인데요, 그 문제는 건설부에서도 다른 법에서 그와 같은 규정들이 여러 건 있었는데 매번 세월이 좀 경과한 후에 전부 법에서 삭제되거나 폐지되었다는 것을 기술감리담당관실에서 참고해 주셨으면 고

맙겠습니다.

좌 장 :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 했기 때문에 많은 질문 사항이 있을 줄 알지만 한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자 : 대한건축사협회 의의구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이 제정, 정착되어 실질적인 운영이 되어오고 있는데 이 법이 우리나라의 건설관계제도에 발전적 기여를 크게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기법이 통과될 적에 저희 건축사협회에서 굉장한 반발을 하고 특히 건축사들의 설계에 대한 감리권한을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냐해서 저희가 생존권 보존차원에서 극력 반대투쟁 했습니다.

그러나 동법을 입법화할 적에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하는 50억원 이상의 건축공사에 대하여 품질관리위주의 시공감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행정부에서 명분을 강조하였고 저희 건축사들도 그러한 중요한 국가기관 건축물을 완벽하게 설계하고 감리하지 못했던 점도 있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대국적 견지에서는 필요할 것이라 해서 입법화 됐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민간공사까지 시공감리회사의 영역으로 침범당하지 않겠느냐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걱정했을 때 건설부 당국자들은 여러 자리를 통한 협의에서 절대 그러할 리 없다고 하는 답변을 그당시 여러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미나장에 와보니까 공동주택이라는 민간공사까지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과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 등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민간공사 부분도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초에 걱정이 예견되던 사항등이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현실로 닥치는구나 하는 것을 느껴습니다.

특히 방금 얼마전까지도 개인적인 자리에서 절대 그러할 수 없다고 하던 본협회 이사가 그러한 발언을 하는데 대하여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 현재 범으로서 그대상 범위를 공공공사로서 일정규모 이상인 건축공사로 못박혀 있는 이법을 앞으로 개정하여 민간공사까지로 확대할 예정이신지의 의견을 박과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좌 장 : 이 답변은 박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간단히 해주시지요.

박수남 : 저희가 맡고 있는 분야는 공공공사부문이기 때문에 민간공사 부문까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제범위를 벗어납니다만 단지 이것을 합칠 것인가, 앞으로 재편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다시 말씀드려서 민간공사 부문과 공공공사부문을 합치느냐 분리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건기법은 시행연한이 짧지만 나름대로 시행되어 온 두 분야이므로 더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신 가운데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 발전시켜나가야 할 과제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자 : 현재 법에는 관공공사 밖에는 건기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하게 되어 있으므로 민간공사까지 하려면 법개정 전까지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편법으로서 그렇게 확대시행할 것이라는 항간의 이야기도 있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런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박수남 : 현행법에 그렇게 되어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문자 :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 : 죄송합니다만 그부분에 대하여 행여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현행 건기법상에는 시공감리자가 공공부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앞으로 법이 그대로 존속하는 한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아까 제가 감리전문회사의 조직을 일원화하자는 것과 시공감리대상 건축물의 분류를 공공부분과 공동주택으로 하자는 이야기는 바로 감리전문회사의 조직을 일원화하자는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다음 그렇게 하면서 현재까지 시공감리 전문회사의 감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감리와 기타 건축물의 모든 감리는 어느 토론자의 말씀도 있었듯이 건축사 즉 설계자가 설계의 연장선상에서 감리를 하는 것으로 앞으로의 제도나 법이 개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감리가 감독의 권한이 없이는 수준있는 감리의 수행이 곤란하니까 현행 건기법에 의한 시공감리는 전면책임감리쪽으로 운용되어야 발전이 된다는 것과 또 그렇게 하면서 건축사법과 건기법이 같

이 조화있게 운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므로 행여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좌 장 : 감사합니다. 너무도 열띤 토론이었기 때문에 좀더 많은 의견교환을 하고 싶지만 약속된 시간도 많이 경과되었고 해서 오늘 세미나는 이것으로 종료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에 있어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도 많은 건설관계인이 상황을 이루어 주셔서 그동안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감리의 정의 업무의 성격, 책임 한계와 짧은 기간동안 시행되어온 시공감리제도에 있어 보수기준의 제정시급이라든가 시공자, 발주자, 감독자, 감리자들의 서로간 입장이라든가 이에 부수하여 나타난 서로의 의견과 그 발전 방향을 기탄없이 나누었다는 데에 저희 주최자측 입장에서 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이 세미나를 계기로 앞으로도 공사감리제도 특히 시공감리제도의 발전 방향을 서로간에 숙의하면서 정책입안자인 행정부나 관련단체, 시공자가 여러가지 나타난 현실적 문제점을 분석하여 우리의 여건에 알맞는 좋은 제도를 대안으로 마련하고 발전시켜 나아가서 보다 좋은 감리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격무에 바쁘신 중에서 장시간 진행된 이 세미나에 끝까지 성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또한 여건이 허락하면 다시한번 이러한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發刊案内

(社) 大韓建設振興會 刊

1992 建設 工事 표준품셈



土木・建築・機械設備 및 電氣・通信工事費 算出의 基準書

工事費 算出을 이 한권으로 해결하기 위해 土木, 建築, 機械設備篇을 全文 수록하였고 電氣・通信篇은 屋內工事は 全文, 屋外工事は 共同住宅園地 및 大型빌딩에 必要한 품을 拔萃수룩하는 것으로 大幅 補完하였습니다.

올해는 예년도와는 달리 土木 51, 建築 19, 機械設備 16 등 모두 86개의 많은 項目에서 新工法, 新資材, 新裝備 등 새로운 技術 導入으로 因한 "품"이 大幅 反映, 增補됩니다.

본 標準품셈은 利用하는 實務技術者의 理解를 돕기 위해 註解, 例題를 添記하였고 建設工事が 앞으로 大型化, 機械化, 專門化, 複雜化되어 多樣한 工法이 要求됨에 따라 92年版에는 政府품셈에서 未解決된 품을 參考提案(參考資料)으로 수록, 新工法을 適用할 수 있는 機會를 提供하였습니다.

體裁를 刷新했습니다.

• 政府 公布原文의 順序에 充實하게 配列하였으며 分野別 共通事項은 共通部門으로 한데 묶어서 整理하였습니다.

• 質疑應答은 政府의 有權解釋을 土台로 한 內容을 수록함으로써 結果에 대하여 公信力을 附與하였으며 當會 解說 編纂分은 註解, 例題, 參考提案, 註釋例, 質疑應答, 參考 등의 기호를 使用하여 原文과의 區分을 明確히 하였습니다.

精誠을 다해 編纂했습니다.

• 當會는 工事費 積算基準 施策의 主務官署인 建設部의 支援를 받아 바로 正確한 內容의 品셈을 發行, 普及하는데 使命을 다하고 있습니다.

• 當會의 品셈編纂委員會는 多年間 政府品셈을 直接 다루거나 設計 및 施工監理에 豊富한 經驗을 쌓은 技術陣(前・現職 公務員과 公共機關의 實務責任者)들로 構成되어 있으며 精誠을 다하여 責任執筆하고 있습니다.

• 컴퓨터 組版으로 活字가 미려하고 印刷가 鮮明하며 視覺的인 여유를 주는 일리스트와 添附用 견출지 등 實務擔當 技術者의 便宜를 勘案한 品셈의 決定版임을 자부합니다.

注文申請 接受中

申請 및 問議連絡

(社) 大韓建設振興會 月刊 国土建設 管理部

TEL: 555-0816, 557-7370, 562-2842,

567-6255

FAX: 557-7370

· 4×6 / 양장 값20,000원